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결재	담당	데리	과장	소장

제목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많은 사업자와 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 귀 기관에 포스터 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 사업명 :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 나.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다. 사업기간 : 협약 후 ~ 2020. 11. 말까지
- 라. 지원규모 : 7개 기업 내외, 사업화개발비 70,000천원(기업별 1천만원 한도)
- 마. 모집기간 : 2020년 3월 24일(화) ~ 4월 14일(화)
- 바. 접수기간 : 2020년 4월 08일(수) ~ 4월 14일(화)
- 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원본서류 1부 및 파일 담은 USB 제출)
- 아. 제출서류 및 기타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yangse.or.kr) 참조

붙임 : 1)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



수신자 고양상공회의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고양선
특화지원센터), 삼송테크노밸리운영단, 일산테크노타운협동조합, 대방트리플라운비즈니스타
워, 동국대고양창업지원센터, 중부대고양캠퍼스창업처, 항공대창업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
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북부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
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책임 김연중 센터장 전결 03/20
김민수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136 (2020.03.20.) 접수 ()

우 704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www.gipa.or.kr,
전화 031-960-7875 /전송 031-819-8808 / yonjoong@gipa.or.kr / 공개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20년 3월 24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부록】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세부사항		
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른 품목별 입주 지원(3기업 내외)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1천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11,000천원	10,000천원	1,000천원

※ 예) 총 사업비 (본인부담금 포함) 최대 12,100천원(부가세 포함) 활용
- 사용항목 : 사업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

세목	내용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 시작제작 경비
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보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웹페이지 등) - 모바일 앱 개발 - CI, BI, 포장 등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TV 및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등에 대한 광고 -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면역 포함 가능)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판촉물(영화, 달력, 수첩 등), 일회성 전단지, 현수막 제작
교육·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강의 교재비, 수강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비 - 국내 시장조사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 인증획득비(시험, 제품, 시스템 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사업비의 20% 이내

O 사업명 :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 공모전)
O 사업내용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O 사업기간 : 협약 후 ~ 2020. 11. 말까지
O 지원규모 : 개별 기업 내외, 사업화개발비 70,000천원(기업별 1천만원 한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목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로 천천, 청관 수립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신청(2021년 하반기까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정신 및 창업 과정(10시간 이상) •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프로그램 운영 •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 운영(안)
----	--

내용	시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사례	2
사회적기업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제도	2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2
사회적기업의 경영·회계	2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2

(※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창업, 경영 등 전문가와의 1:1 코칭
- ▶ 소셜 미션 및 사업모델 명확화
- ▶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지정 및 인증
- ▶ 경영(회계, 법률, 구매 지원 서비스), 마케팅, 투자 등 전문 멘토 연계 지원
- 대표 및 사업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II.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이 가능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의 조치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을 목표
 - 선정 후 1개월 내 고양시로 소재지 이전 가능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1.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동일 과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기업
 - 3.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III.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0. 3. 24.(화) ~ 2020. 4. 14.(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년 4. 14(화) 18:00까지
- 접수처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서류(원본, 사본 각1부)와 파일 제출
 - 접수기간 내 방문하여 서류 제출과 USB 제출 모두 접수만 인정
 - 방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 제출서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oyangse.or.kr) 신청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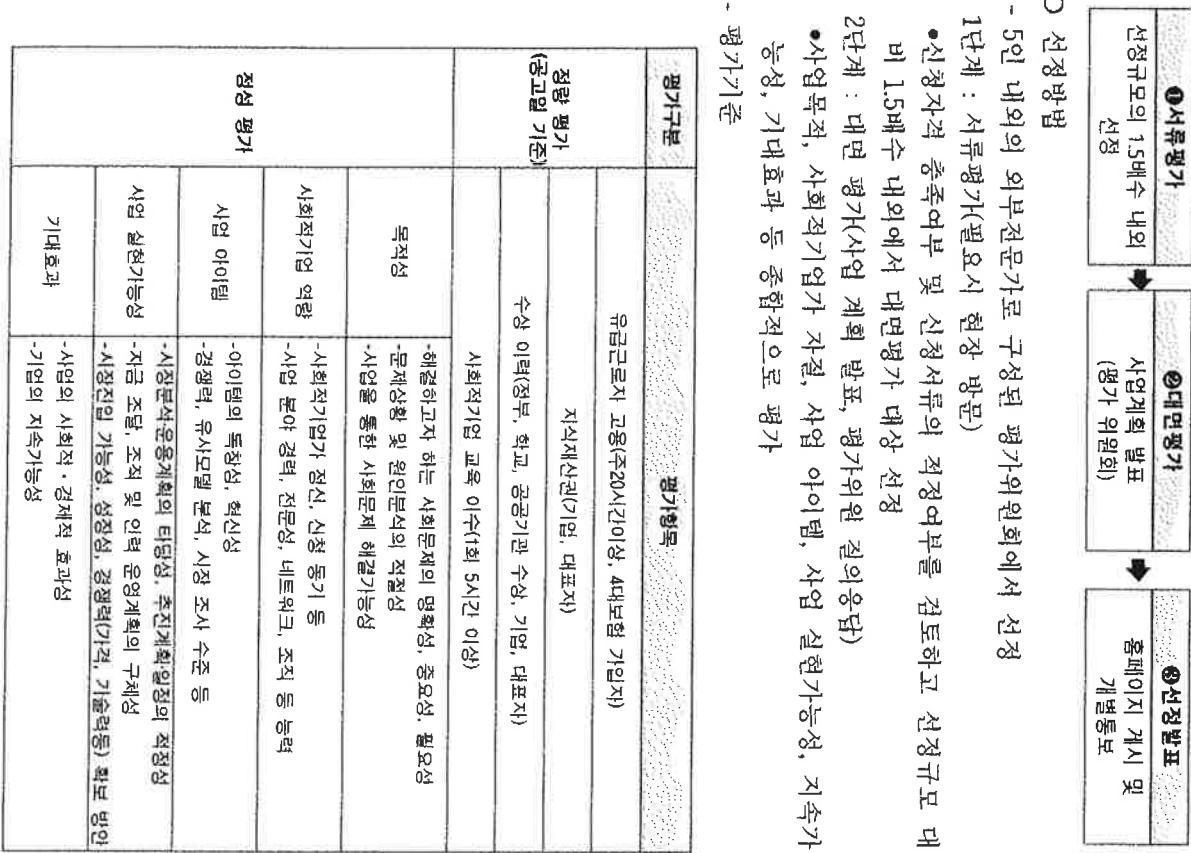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학약서
8. 각종별 자료(선택)
 - ▶ 유급근로자 명부
 - ▶ 취약 계층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기부(후원) 및 봉사 활동 증명서
 - ▶ 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증, 수상실적
사업 관련 보유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 위(1~8번) 서류 전체를 순서대로 한글파일에 붙임(이미지 삽입)하시고 PDF 파일로 변환하여 압축 형식(ZIP)으로 제출 ※ 파일명: 창업지원사업-(기업명)

▣ 문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960-7875

IV. 선정 평가

○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1단계 : 서류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 신청자격 종속여부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규모 대비 1.5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대상 선정
- 2단계 : 대면 평가(사업 계획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가 자질, 사업 아이템, 사업 실현 가능성, 자속가능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신청 평가 (종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급근로자 고용(주20시간이상, 4대보험 가입자) 지식재산권(기업, 대표자)
수상 이력(정부, 학교, 공공기관 수상, 기업, 대표자)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1회 5시간 이상)	
목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중요성, 필요성 -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기업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초기 등 - 사업 분야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조직 등 능력
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템의 특창성, 혁신성 - 경쟁력, 유사모델 분석, 시장 조사 수준 등 - 시장분석·운용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일정의 적정성
사업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현 가능성 - 지금 조달, 소재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 시장진입 가능성·성장성, 경쟁력(기획, 기술력 등) 확보 방안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

3. 선정 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이메일) 안내

4. 협약

- 최종 선정 후 지원협약 체결
- 교육/컨설팅 및 중간 진도 점검을 통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및 사업 중단 시 참여 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평가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V. 의무사항

○ 선정기업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기업부담금을 선정사업 운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시기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 체결 시	지원금	협약기간 + 365일

*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선정 취소 등 후속 처리

- 사업기간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인증 요건에 따른 기업 형태(법인 등)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정관/규약(공증필수)을 구비해야 함

▶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 예 따른 법인·조합
 - 「상법」, 예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인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인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활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활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예산 및 결산 시기 등에 배분 가능한 전여재산이 있는 경우 전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이 조건은 「상법」 예 따른 회사·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및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경기도 및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신청해야 할

-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 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재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VII. 주간일정(안)

진정	내 용	일정	비 고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고 •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24. ~ 4. 14. 4. 08. ~ 4. 14. 	
선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1차/필요시 현장점검) • 대면평가(2차) • 선정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20. ~ 4. 24. 4. 28. (예정) 5. 06.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개별 안내(4. 27.)
협약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사업계획서(필요시) 제출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참석필수 • 지원금 1차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08. ~ 5. 12. 5. 15. (예정) 6. 01.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침 및 일정 안내 기업부담금, 증권 제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실행 •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청拭필수 • 중간보고서 제출(8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01. ~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점검 (8월 말 예정)
최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최종평가, 지원금 2차 교부 • 결과공유회 진행(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삼기 일정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취소 시 1차 서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VIII.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협약 후 총 지원금의 80% 이내로 선지급 하며, 최종평가(사업 정산보고) 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20% 내외를 후지급 함(협약기간 내 종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협약서(사업 계획서)의 예산 미소진 또는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발생

시 지원금 학습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공고 사항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IV. 문의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031-960-7875)